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2014. 10.

보고자: 박선영 · 송효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I. 출장 개요

과제명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Ⅱ)」
출장 내용	<p>■ 목적 독일·오스트리아의 성별(젠더)입법평가 관련 기관 및 입법 기관(연방의회, 주의회)과 여성정책 담당기구(연방정부, 지방정부) 방문과 전문가 면담 및 네트워크 형성</p> <p>■ 내용 입법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젠더분석을 명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럽 국가인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관련 기관, 입법 기관 및 여성정책 담당 기구 방문 및 전문가 면담을 통하여 젠더관점에서의 입법평가 발전을 위한 시사점 도출 및 여성·가족관련 최근 입법 및 정책 동향 파악.</p> <p>■ 방문·면담 대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 연방의회 (베를린) -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베를린) - 독일 베를린주 노동통합여성부(베를린) - 오스트리아 연방 여성부(빈) - 오스트리아 빈 시 여성부서(빈) - 연방수상청 헌법지원국(빈) - 주 정부 헌법지원국(Niederösterreich 주)
출장자	박선영, 송효진
출장지	독일(베를린), 오스트리아(빈)
출장 기간	2014.9.25.-2014.10.2. (6박8일)
비용부담	본원 연구사업비

II. 목적

- 입법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 가운데 젠더분석을 명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유럽국가인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관련 기관/의회 방문 및 전문가 면담
- 독일·오스트리아의 10년 이상의 성별입법평가 운영 경험 및 사전적·사후적 평가를 병행하는 입법평가의 한 분야로서의 성별입법평가 운영에 대한 노하우 및 제도 발전 방향 논의
- 독일·오스트리아의 여성·가족 관련 최근 입법 및 정책 동향 수집
- 관련 연구자 및 전문가 그룹과의 국제 네트워크 구축

III. 출장 인력 구성

기관	부서	직위	이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사회통합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사회통합연구실	연구위원	송효진

IV. 출장 기간 : 독일, 오스트리아 : 2014.9.25(목)-.10.2(목) (6박8일)

독일 베를린	2014.9.25.-2014.9.28.
오스트리아 빈	2014.9.28.-2014.10.2.

V. 세부 일정

일시		내용	장소
9.25.(목)	서울 출발 베를린 도착	00:55 인천공항 출발 08:25 베를린 도착	
	15:00-17:00	독일 연방의회 가족노인여성청소년위원회 방문. 면담자: -Paul Lehriede 연방 의원 (연방의회 의원, 가족노인여성청소년	독일 연방의회 가족노인여성청소년위원회 (Deutscher Bundestag, Ausschus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위원회 위원장)	Paul-Löbe-Haus, Konrad-Adenauer-Straße 1, Berlin)
9.26.(금)	10:00-12:30	독일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방문 면담자: -Dr. Katharina Penev-Ben Sharhar	독일 연방 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Referat 405-Europäische und internationale Gleichstellungspolitik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Division 405-European and International Gender Equality Policy Federal Ministry for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Glinkastraße 24, D-10117 Berlin)
	14:00 -17:00	베를린주 노동통합여성부 여성·성평등 정책 부서 방문 면담자: 여성·성평등정책부서 공무원 -Ms. Ruel-Andresen -Ms. Claudia Hochhäuser	베를린주 노동통합여성부 여성·성평등 정책 부서 (Senatsverwaltung für Arbeit, Integration und Frauen, Berlin / Abteilung Frauen-und Gleichstellungspolitik, ALI 1)
9.27.(토)	10:30-18:00	자료 수집 및 정리	Berlin
9.28.(일)	베를린→빈	10:25 베를린 출발 11:45 빈 도착	
9.29.(월)	10:00-12:00	빈 시 여성부서 방문 면담자: 여성부서 공무원 -Ms.Mag.a Karin Tertinegg -Ms.Mag.a Alina Zachar	MA 57-Frauenabteilung der Stadt Wien (Friedrich-Schmidt-Platz 3/4, Stock 1080 Wien)
	14:00-17:00	오스트리아 연방 교육여성부 사회경제적 성평등, 국제·유럽연합 사무 부서 방문 면담자: 성평등-국제·유럽연합 사무 부서 공무원 -Ms.MMag.Eva-Maria Burger -Ms. Jacqueline Niavarani	오스트리아 연방 교육여성부 사회경제적 성평등, 국제·유럽연합 사무 부서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rauen Abt. IV/6 - Sozio-ökonomische Gleichstellung, Internationale und EU-Angelegenheiten)
9.30.(화)	10:00-13:00	연방수상청 헌법지원국 방문 (Bundeskanzleramt, Verfassungsdienst) 면담자:	Bundeskanzleramt, Verfassungsdienst Bundeskanzleramt Österreich / Öffentlicher Dienst und Verwaltungsinnovation Abt. III/9 -

		-MR. in Mag. a Ursula Rosenbichler -Ms. Petra Gehr-Modrian -Mr. Rolend Schneider	Wirkungscontrollingstelle des Bundes, Verwaltungsinnovation (연방수상청) Ballhausplatz 1 1010 Wien
	14:00-17:00	Niederösterreich 주정부 소속 공무원 면담 -Dr.in Sabin Hilbert	면담장소 : Griensteidle, Wein
10.1(수)	빈→서울	16:00 오스트리아 빈 출발	
10.2(목)		15:00 인천공항 도착	

VI. 출장 결과

■ 독일

□ 독일 연방의회 여성가족노인청소년 위원회(Deutscher Bundestag, Ausschuss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 면담자인 Paul Lehriede 독일 연방의회 여성가족노인청소년 위원장은 현재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끄는 집권당인 기독교민주당(CDU)과 기독교사회당(CSU-바이에른 주를 지역기반으로 함) 연합정당 소속으로서 바이에른 주를 지역구로 하는 연방의원임.

○ Lehriede 위원장은 독일의 여성가족 관련 최근 현안으로 저출산 문제의 대책으로서 부모수당의 확대(Elterngelt + a) 및 여성임원할당제를 들었음.

○ 부모수당 확대 방안(Elterngelt + a)

-현재 유럽에서도 가장 출산율이 낮은 국가들 중 하나인 독일은 최근 기존의 부모수당(Eltern Gelt)을 확대하는 방안(Elterngelt + a)을 논의 중임.

-기존의 Elterngelt는 14개월인데, 새 제도인 Elterngelt + a는 2년으로 확대하고 파트타임(근로시간의 50% 이상)인 부모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함.

○ 여성임원할당제

-현재 독일은 연방의회 여성가족노인청소년 위원회에서는 여성임원할당제법안의 통과가 최신 이슈임.

-2016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의 감독이사회에 30%이상을 여성으로 할당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독일 연방 여성가족노인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 성평등부서의 입법 및 정책 동향

-현재 가장 큰 프로젝트는 임원할당제임.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기업(큰 규모)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 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기업에 적어도 30% 이상 여성임원이 있도록 달성하려 함. 입법 배경은 2001년도 독일 정부와 민간경제부문 간에 여성임원에 대한 목표제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나, 지켜지지 않고 달성이 되지 않아 이를 강제하는 입법을 추진하게 되었음. 법안에서 할당 비율을 30%로 한 이유는 연구결과 적어도 30%이상의 여성이 임원단에 있어야 남성중심의 분위기가 변화할 수 있고, 중립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함. 이는 반드시 확보되어야 하는 최소한의 수치임. 이때의 여성은 그냥 여성이 아니라 여러 배경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어야 하며, 향후 제도가 정착·발전하면 더 확대할 수 있는 것임.

○ 성별입법평가(사후적 입법평가)

-독일에서는 사후적 입법평가를 해야 한다는 명문의 법규정은 없으나, 각 부처에서 사후적 입법평가를 하고 있음.
-입법평가 대상은 사회적 이슈, 현안을 파악하여 문제점이 있으면 관련 법을 입법평가의 대상으로 선정,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입법평가 수행하도록 함.
-연방 여성가족노인청소년부에서도 성매매 관련 법 등 여성부 소관 법률에 대하여 사후적 입법평가를 수행하고 있음.
-여성부 소관 법률이 아닌 타 부처 소관 법률이라 할지라도, 여성·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 있는데 소관부처에서 이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경우 여성부에서 직접 입법평가를 하거나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사후적 입법평가를 수행함. 이 경우 개선과제가 나오면 마지막에는 두 부처(여성부와 당해 법률 소관부처)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게 됨. 현실적으로는 EU지침을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소관부처가 개선안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부처 간의 갈등과 다툼은 더 단계가 올라가면 결국 정치적으로 해결되어야 한 사안이 되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여성부 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EU 산하 성평등연구소(리투아니아 소재)에서 각 부처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경우 여성(또는 성평등) 부처 장관 역할의 중요성에 관하여 연구한 바 있음.

□ 베를린주 노동통합여성부 여성·성평등 정책 부서(Senatsverwaltung für Arbeit, Integration und Frauen, Berlin)

○ 베를린주의 여성·성평등 입법·정책 동향

- 연방 뿐 아니라 지방 정부인 베를린에서도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Elterngelt + a가 가장 최근의 현안임
- 베를린주에서는 한부모가족(특히 싱글맘)이 독일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고, 터어키계 이민자가 많다는 특징이 있음. 베를린 주는 연방집권당과는 다른 시각으로, 저출산 및 육아정책에 있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양육수당이 아닌 공공보육시설의 확충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성별입법평가(사후입법평가)

- 지방정부인 베를린 주 역시 각 부서에서 입법평가를 하고 있음.
- 다른 부서의 자치법규 중 여성·성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지만 자체적으로 입법평가를 잘 하지 않는 경우 여성부서에서 입법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으나, 개선안을 강제할 수 없고, 부서간의 갈등이 타결이 되지 않으면 베를린 주의 최고 정책결정권자가 결정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 현실임(연방의 경우와 같은 한계와 현실).

○ 베를린주에서의 사후입법평가 CASE 소개

- 최근 「Ausschreibungs- und Vergabegesetz des Landes Berlin」에 대한 입법평가를 진행중임
- 이 법(州法)은 베를린 주에서 도시시설 관련하여 민간기업에 용역을 주는 경우, 즉 조달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기업의 여성직원의 비율, 여성 및 모성보호 지원, 가족친화 경영 등을 조건으로 규정한 법(베를린에만 있으며, 연방에는 없음)으로서 이에 대한 사후입법평가를 진행중임.
- 아직 입법평가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결과가 나오면 자료를 받기로 함

○ 매년 독일에서 개최되는 여성·성평등 관련 국제 컨퍼런스 홍보.

- 2014년 비스바덴에 이어 2015년에는 베를린에서 개최예정.
- 2014년 비스바덴에서의 컨퍼런스 주제는 여성의 재상산권. 노동시장 관련 여성 이슈임.
- 베를린 주 여성부서는 2015년 컨퍼런스를 준비 중으로, 추후 관련 자료가 준비되면 보내 주겠다고 함.

■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 연방 교육 여성부_사회경제적 성평등, 국제·유럽연합 사무부서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Frauen Abt. IV/6 - Sozio-ökonomische Gleichstellung, Internationale und EU-Angelegenheiten)

○ 기관 주요 업무 소개

-성평등, 성주류화, 일가정양립, 성평등모니터링, UN 및 NGO지원업무, 여성을 위한 Hot Line 업무(이주 여성을 위한 외국어 서비스도 진행하고 있음), EU의 성평등 지침의 국내 이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오스트리아의 최근 여성·가족 관련 입법 및 정책 현안

- 임금의 성별격차문제가 오스트리아에서는 여전히 이슈임.
- 오스트리아의 여성 70%가 고용되어 있으나 이들 중 절반은 파트타임으로 고용되어 있음. 이들 중 많은 사람은 파트타임을 진정으로 원해서가 아니라 가정 내 돌봄 때문에 파트타임을 선택하는 것임. 이러한 고용 형태는 성별 임금 격차(24%) 가져옴 .
- 파트타임 요소를 제거하여도 16%의 성별 임금격차가 발생하는데 또 하나의 요인은 성별 직분 및 직급 차이임.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오스트리아 여성부는 여성이 풀타임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충하고, 공공과 민간부분 고위직급에 여성진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정책 특히 여성이 임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멘토링 프로그램인 “Cross-Mentoring”) 등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성별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입법과제는 현행의 150인 이상 고용 기업으로 하여금 고용인의 임금보고 제도를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는 것, 그리고 구인광고시 최저임금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을 입법화하는 것임. 그로써 여성들이 임금수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직업분야와 전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학생, 교사 부모 등에게 여성들이 더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직업분야로 나아갈 수 있는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예정임.

□ 빈 시 여성부서(Frauenabteilung der Stadt Wien)

○ 빈 시의 최근 여성·가족 관련 입법 및 정책 현안

- 성매매가 합법화되어 있는 오스트리아에서의 성매매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이슈가 논란이 되고 있음.
- 최근 남성육아휴직제의 강화·확대를 논의중임.
- 동성 커플의 입양 문제 및 관련 법제가 현안이 되고 있음.

○ 빈 시의 향후 여성·가족 관련 입법·정책 과제

- 광고주에 대하여 여성에 대한 비하, 선정성에 대한 규제 등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광고 규제 정책 및 법안을 추진하고자 함.
- 성매매·노동 관련 법제 대한 입법평가가 필요함.
- 최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법제의 개선·강화를 추진할 예정임.

□ Niederösterreich 주(州) 정부

○ 주 정부의 최근 여성·성평등 정책 현안

- 현재 주 정부는 상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여성의 풀타임 일자리 창출, 해 여학생들이 고소득 직업분야로 진출할 수 있는 진로교육 및 직업선택을 교육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
- 또한 주정부차원에서 여성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일가정양립을 위해 Niederösterreich 주에서는 보육시설 이용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아동이 3명 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늦게까지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방에서는 아직도 늦은 시간까지 아동을 보육시설에 맡겨 놓는 것에 눈치를 보는 경향이 있음. 이러한 모든 것을 개선하고 해소하기 위해 주정부가 노력중임.

□ 연방수상청 헌법지원국(Bundeskanzleramt, Verfassungsdienst)

○ 오스트리아의 연방수상청 헌법지원국에서는 입법평가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있음.

○ 사전적 입법평가

- 법안 발의시 연방 및 주 정부의 모든 부서가 반드시 입법평가를 시행하여야함.
- 모든 제·개정 법률이 입법평가의 대상이며, 소관 부처가 자체적으로 성별입법평가를 하여야 함.(2013년 이전에는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으나 2013년부터 모든 법·부서로 확대됨)
- 성별입법평가를 법안담당자가 직접 하는 부처도 있고, 성별입법평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별도로 수행하는 부처도 있음. 그에 따른 평가의 질도 달라지는 것이 현실임.

○ 사후적 입법평가

- 이슈가 되는 특정 분야 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는 이미 수행되어 왔음.
- 2013년부터는 모든 제·개정 법률안에는 해당 법률이 3-5년 안에 “법이 목적을 달

성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로 한다”는 것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3-5년 후 해당 법률이 목표를 달성했는지 평가를 하게 되고, 평가결과 연방수상청에서 개선의견을 제시함.

- 연방수상청의 개선의견은 강제성은 없지만, 부처에서 개선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그 이유를 기재해서 제시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모든 법률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 제도 운용 추이를 봐서 모든 법률이 아닌 주요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개선할 의향도 가지고 있음.